

미국의 이혼 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평가에 대한 고찰

Literature Review of The Present Situation and Evaluation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after Divorce in the USA.

한림성심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유희정

Dept. of Social Welfare, Hallym College
Professor : Yoo, Hi-J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전망 |
| II. 프로그램 실시의 사회적 배경 | V. 결론 |
| III. 프로그램의 현황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esent situation and evaluation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after divorce in the USA. Divorce Education Programs for Divorcing Parents have been explosively developed and executed after 1990's in America, and the half of them are court-connected mandatory prevention programs. This paper analyses the social background of nationwide provision, the present situation, and evaluates the evaluation and future prospect of the programs. Finally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society are suggested.

주제어(Key Words): 이혼 후 부모교육 프로그램(Parent Education Program after Divorce), 법원이 명령한 예방 프로그램(court-mandated prevention program), 이혼 후 부모간 갈등(post-divorce parental conflict), 협력적 부모 역할(coparenting)

I. 서론

미국에서는 매년 110만건 이상의 이혼이 일어나며, 총 100만명 이상의 아동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

한다(Johnston & Roseby, 1997). 그동안 이혼에 관한 축적된 연구들은 이혼 경험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즉각적인,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부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며, 많은 경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

Corresponding Author: Yoo, Hi-Jung, Hallym College, 790 Janghak-ri, Dong-myun, Chuncheon-si, Kangwon, 200-711 Tel: 82-33-240-9151
Email: nanalina@hanmail.net

다. 부모가 이혼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일반적으로 낮은 자존감, 낮은 학업 성적, 과잉행동,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행동, 우울함과 위축 등 내현적 행동을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인이 되어서도 우울증과 대인관계상의 문제를 보이며, 이혼과 불행한 결혼생활로 이어지기도 한다(Amato & Keith, 1991; Ross & Mirowsky, 1999), 그리고 소수이지만, 심각하게 양육권 다툼과 굽히지 않는 법정 다툼을 하는 부모들 사이에 있는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Johnston and Roseby, 1997). 여기서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예방하려는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에서는 가정 법원을 중심으로 지난 10년 동안 이혼하려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노력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수백여 관할 법원들은 이혼 이후의 자녀양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앞장서왔다. 1996년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541개의 카운티가 이혼 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채택하였으며(Blaisure & Geasler, 1996), 1998년까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카운티의 수는 1,516개로 거의 3배가 되었다(Geasler & Blaisure, 1999). 이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려는 노력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도 최근 들어 이혼이 급증하면서 1990년대 이후 이혼가족, 특히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과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져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로 자녀양육의 실태와 애로점등을 조사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6;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1; 장혜경, 민가영, 2002). 이혼한 여성들은 자녀양육의 부담을 느끼며, 자녀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을 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이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이혼 후 적응을 위한 장, 단기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다(김득성, 2002; 문현숙, 김득성, 2002). 이 중 장기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자녀의 반응과 대처전략 알기, 부모 자녀간 마음 열

기 등 부모역할 수행을 위한 내용이 일부 들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혼한 부모 당사자의 개인적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본격적인 부모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에서 이혼 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급격히 증가한 사회적 배경과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법 등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이혼 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II. 프로그램 실시의 사회적 배경

1980년대 후반부터 특히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지난 10년간 미국에서는 이혼 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숫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보급이 확대되어, 미국에서는 현재 10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Braver et al, 1996). 미국에서 실시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민간, 비영리 사회 기관에 의해 운영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많지만, 최근에는 가정법원들이 적극 나서면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법원과 연계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미국에서 실시되는 부모교육의 약 절반 정도는 법원과 연계하여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는 이혼이 자녀에게 일시적으로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자녀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많은 연구논문과 저서를 통해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혼은 자녀들에게 낮은 자아개념과 학업성적, 대학진학 등 인지적인 면에서, 정서적으로 우울, 불안과 같은 적응상의 문제, 공격성이나 비행, 등 외적인 반사회적 행동, 친구관계나 이성관계, 심지어는 결혼 후 부부관계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면에서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등 자녀의 전반적인 복지를 낮춘다고 보고되고 있다(Amato, 2000; Amato & Keith, 1991; Wallerstein, 1989).

여기서 많은 연구들이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매개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애를 써 왔다. 초기의 연구들은 아동의 특성이나 가족의 인구학적 특성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점차로 자녀의 적응을 매개하는 것은 이혼 그 자체가 아니라 부모가 이혼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양 부모와의 안정되고 애정적인 관계는 이혼에 대한 자녀의 긍정적인 적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임을 밝힌 Wallerstein & Kelly (1980)의 연구 이후 길게는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종단적 연구들(Aro & Palossari, 1992; Furstenberg & Teitler, 1994; Wallerstein, 1989)은 부모간의 갈등 정도와 같은 협력적 부모 역할이 아동의 이후 적응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혹은 이혼 이후에 부모간의 갈등이 심한 경우에 자녀는 공격성, 퇴행, 우울증, 학업성적의 하락, 부모와의 갈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여기서 미국에서는 이혼 후 전배우자간의 갈등을 줄이고, 협력적 부모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이 자녀의 적응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를 도우는데 있어서 핵심적 문제는 이혼하려는 부모들로 하여금 배우자로서의 역할과 부모로서의 역할을 분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Emery, 1994). 이혼을 하는 시기는 정서적 재확인에 대한 아동의 욕구가 최고 정점에 이르는 시기이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이러한 시기에 부모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와중에 있으며, 그 결과 부모들은 자녀가 크게 필요로 하는 지지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하기가 쉽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한 이혼 가족에 대해 사회가 체계적으로 개입하여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지속적인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어 왔으며, 특히 이러한 사회적 노력에 사법부가 앞장을 서왔다.

이혼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려는 이와 같은 사회적 노력에 사법부가 앞장을 서게 된 것은 미국의 경우 이혼 후 부모간의 갈등은 가족과 법원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는데 대한 인식이 커진 것과 관련이 있다. 많은 경우 부모간 갈등은 이혼 후에도 크며, 양육권에 대한 분쟁, 자녀양육비의 미지급, 방문에 대한 분쟁, 비양육 부모의 방문약속 불이행 등은 이혼 후 소송의 원인이 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이혼하는 가족 전체 중 1/4이 법원의 도움을 구하며, 법원으로 가는 가족의 거의 반 정도 혹은 이혼하는 가족 전체의 1/10 이상은 분쟁을 간단한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높은 소송율과 재소송율, 심한 분노와 불신, 욕설, 간헐적인 신체적 공격의 사건들을 경험한다(Maccoby & Mnookin, 1992).

이 같은 이혼 후 양육권이나 방문권, 자녀 양육비 등 자녀를 둘러싼 부모간의 법적 소송이 심각하게 사법부에 부담이 되며, 이와 관련된 가족들이 지불하는 엄청난 금전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전통적인 재판체제는 양편의 입장을 양극화시키고, 가족 갈등을 오히려 고조시킨다고 오랫동안 비판받아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매년 대략 20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변함 없는 스트레스와 끝없는 분노와 불신에 지속적으로 노출 된다. 끊임없는 증오가 자녀들의 전 성장 기간을 그늘지게 하는 이러한 가족의 아동들은 심각한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가족의 아동들보다 4배에서 5배나 더 많다(Johnston, 1994).

따라서 가족의 문제는 법원에서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공유됨에 따라, 사법부는 공동 친권(Joint custody), 무과오 이혼(no-fault divorce), 양육비 이행의 강화 등 이혼을 둘러싼 법적 과정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뿐 만이 아니라, 소송이전에 조정(mediation)을 의무화하려는 노력, 이혼교육 프로그램, 중재와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자 시도하고 있다(Johnston & Roseby, 1997).

이러한 사회적인 노력 가운데 가장 초보적인 예방조치의 하나가 이혼하려는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이다. 이혼 교육은 "상당이나 조정의 목적이 아닌 교육적 목적을 갖는 조직화된 집단 모임이며 가족들을 위해서 이혼 전이에 초점을 둔다"고 정의되고 있다(Blaisure & Geasler, 1996). 이혼 교육은 이혼하

려는 넓은 범위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가족의 붕괴가 자녀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해로운 효과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이러한 악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 후 부모교육은 비용이 덜 들고, 대중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의 하나다.

이혼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시발은 1970년대 중반 캔사스, 존슨 카운티에서 시작한 법원이 명령한 이혼 부모교육으로 추적할 수 있다(Roeder-Esser, 1994). 국립 정신보건원이 최초로 이혼하려는 부모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그 이후 특히 90년대 이후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었는데, 여기에는 판사들과 지역사회 조직들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Salem, 1995). 강제 출석과 자발적 출석 여부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으며, 점차 강제 출석 쪽으로 분명히 방향이 정해져 추세이다.

이러한 이혼 교육 프로그램은 혼인에서 이혼까지 중요한 인생의 전이기에 숙달을 촉진하는 학습의 한 형태인 심리교육으로 볼 수 있으며, '정신건강 교육'의 한 형태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이혼 적응에 대한 이러한 유형의 심리 교육적 접근의 이점은 첫째, 상당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둘째, 임상적인 꼬리표나 지위를 피할 수 있으며, 셋째, 성격상 단기간이 소요되며, 넷째, 병리에 집중하기 보다는 능력에 기반을 둔다는 점이다(Williams, 1979). 이러한 심리교육 집단은 문제를 가진 집단에게 배우는 학습자의 역할과 능동적인 의사결정가로서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능력을 강화' 하는(empowering) 장점을 가진다.

III. 프로그램의 현황

1. 프로그램의 보급

1980년대 중반까지는 이혼 교육 프로그램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었다. 1994년에 실시된 첫 번째 전국 조사(Blaisure & Geasler, 1996)에 의하면 조사

된 3,073 카운티 중 541개(17.6%)가 법원과 연계하여 이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들이 1998년에 실시한 두 번째 조사(Blaisure & Geasler, 1999)에 의하면 조사된 3,118 카운티 중에서 1,516개(48.6%)가 법원과 연계한 이혼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미국 모든 카운티의 거의 반이나 되며, 4년 사이에 프로그램의 수가 3배나 증가하였다. 이처럼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빨리 확산되고 있음은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모든 카운티에서 이혼하려는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주가 1994년 3개에서 1998년에는 8개로, 50%이상의 카운티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주는 1994년 9개에서 1998년에는 27개로 늘어났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Blaisure & Geasler, 1999).

이혼 후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는 Children Cope with Divorce, Children First, Children in the Middle, General Responsibilities as Separating Parents(GRASP), Helping Children Cope with Divorce, Helping Children Succeed After Divorce, Kids First: Parenting Through Divorce, Parents and Children in Transition(PACT), Smile, Parent Education about Custody Effectiveness(PEACE), Parenting Education Seminars, The Family Matters, Family in Transaction, Focus on Kids 등이 있다(Blaisure & Geasler, 1996).

한편 Arbuthnot(2002)은 지역사회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법원과 연계하여 의무적으로 채택할 때 장애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그는 1997년 Geasler와 Blaisur(1999)가 조사할 당시 법원과 연계하여 부모를 위한 이혼 교육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미국의 500개 카운티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65개의 카운티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165개의 카운티 중 57개는 그 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105개는 아직도 프로그램을 채택하지 않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비용 및 재정적인 문제였고, 그 다음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훈련된 인력과 정보의 결여라는 시행상의 기술적인 문제였다. 대개

법원들은 보수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 이러한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카운티에서는 법원이 가족 위기에 대한 법원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혁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지역사회의 지도적 인사들 또한 법원이 가족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진보적인 생각을 갖는 경향이 컸다. 그리고 이처럼 법원이 부모교육을 연계하는 혁신을 채택하는 데에는 의사결정자인 지도자의 능력과 자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혁신을 채택하는 카운티는 이혼 가족을 위해서 부모교육 외에도 양육권 평가, 조정, 개인 상담, 방문 감독, 해결 회의, 가족 서비스 전문가와의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2. 프로그램 실시의 법적 근거

미국의 부모교육의 법적 지위에 관한 1998년 전국 조사(Clement, 1999)에 의하면 부모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석을 요구하는 법적 권위의 소재와 형태는 4가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참석의 유형은 의무이거나 임의(자유재량)가 될 수 있다.

1. 주 정부 법률로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하려는 모든 부모는 의무적으로 교육에 참석하도록 규정하는 유형이다. 현재 이러한 입법은 애리조나를 비롯한 9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미네소타와 테네시주에서는 양육권이나 방문 문제로 다투는 부모에게만 부모교육에의 참여가 강제된다.

2. 주 정부 법률로 법원에 부모교육을 명령할 자유재량권이 부여되는 유형이다. 이 때 법원은 어떤 부모가 프로그램을 참석해야 하는지를 사례별로 판단한다. 이러한 법률은 콜로라도를 포함한 14개의 주에서 시행중이다.

3. 주정부의 법률에 의해 관할 법원은 원할 경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채택할 수 있는 정관(statute)을 제정할 수 있다. 관할 법원은 모든 부모에게 참석을 의무화 하든지 아니면 법원이 사례별로 임의적으로 판단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루이지애나 주를 비롯한 3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4. 주정부 법률에 의거하여 지방 법원이 규칙

(local court rule)을 제정하여 이혼을 허락되기 전에 필수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중 하나로 부모교육에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앨라바마 등 18개의 주에서는 여기에 해당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98년 조사에 의하면 50개 주 중에서 44개의 주가 법원에 부모교육 코스에 참석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주는 주정부 법안 혹은 주 고등 법원, 지방 법원 혹은 행정 법안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이혼 후 부모교육의 상당수는 주 정부 혹은 지방 법원이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성과 구속력이 뒷받침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비공식적인 법원의 관행과 정책에 의해 운영이 보장되기도 한다.

3. 프로그램의 내용

Braver, Salem, Pearson & DeLuse(1996)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100개의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이중 56%는 법원과 연계하여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100개의 프로그램의 내용 중 가장 강하게 포함된 내용은 자녀의 욕구와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간 협력의 이점 및 부모간 갈등의 손해, 자녀의 전형적인 이혼 후 반응, 자녀를 “세뇌”시키고, 다른 부모를 “협박”하는 것의 효과, 서로 다른 발달 단계에 있는 자녀들의 상이한 반응과 요구들, 방문을 허용하고 격려해야 하는 양육 부/모의 책임 등이었다.

어느 정도 강하게 포함된 내용은 부모와 관련된 자녀양육 기술과 갈등 관리 기술 및 정보였다. 구체적으로는 갈등 관리 기술, 자녀양육 기술, 비양육 부/모의 정서적 책임(예, 방문), 부모의 이혼 후 전형적 반응, 공식적인 협력적 부모역할 계획 수립의 이득과 비용, 이혼하려는 부모를 위한 부가적인 지역 사회의 자원들, 분쟁 해결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예; 조정, 양육권 평가, 소송), 양육권 선택 사항(공동, 단독)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약하게 포함된 내용은 가정 폭력에 관한 문제들과 법적인 이슈들이었다. 가정 폭력에 관한 문제들은 이혼 후 부모교육에서는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로는 비양육부/모의 재정적 책임(예: 자녀 양육비), 부모의 법적 권리, 법률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지침에 따라 자녀 양육비를 계산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혼 후 부모교육의 목적이 부모로 하여금 자녀 중심의 사고와 행동을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혼에 대한 자녀의 반응과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것이 프로그램에 가장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프로그램들은 자녀양육 기술과 갈등 관리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만 다루고 있는데, 이는 상당수의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대규모 교실에서 1번의 짧은 교육으로 끝난다는 시간적인 제약과 관련이 된다. 끝으로 법적 이슈들이 가장 약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 제공자들이 대다수가 상담가와 심리학자들인 사실과 관련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프로그램 제공자들이 법조계 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법적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이혼이 가정 폭력과 연관되는 부모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4. 프로그램의 운영

1) 프로그램의 실시 주체

프로그램의 실시 주체는 법원과 연계하여 하는 경우와 민간 기관에서 하는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다. 우선 법원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법원과 프로그램 제공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첫째, 법원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 자체를 법원이 관장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법원이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관, 대학, 정신 건강 전문가와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한 기관이나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유형이다. 셋째는 법원과 공공, 민간 기관, 대학, 정신 건강 전문가가 공동으로 협동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유형이다. 그 외의 상당수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대학, 연구소, 민간 기관, 교회 등 민간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법원과는 무관하게 자

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법원과 연계하여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참석이 의무화되며, 대규모 강의실에서 주로 강연과 비디오 시청을 중심으로 한 두 번의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인지교육의 형태를 띤다. 반면 민간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은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소집단을 이루어 여러 번의 회기 동안 질의 응답과 집단 토론, 역할극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기술 습득을 하게 된다.

2) 실시 시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이혼과정의 초기에 실시되고 있다. 이는 양 쪽 부모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처음부터 나쁜 습관을 예방하고' 갈등을 차단함으로써, 자녀들의 적응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함이다(Stone, Clark & McKenry, 2000). 일반적으로 이혼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며, 아이오와 주와 뉴 햄프셔 주에서는 고지한 45일 이내에 부모 양 쪽이 모두 프로그램을 마칠 것을 요구한다(Clement, 1999).

3) 참여 대상자의 선정방식

이혼 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주 정부나 혹은 지방정부가 이혼을 청구한 모든 부모에게 의무적 참석을 명령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주 정부나 지방정부가 교육에의 참여를 의무화하지만 이혼을 청구한 부모 중에서 특별히 양육권 문제나 자녀 양육비, 또는 방문(면접 교섭권)문제로 분쟁중인 부모로만 한정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판사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례별로 판단하여, 어느 부모가 참석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선정된 부모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야 하는 방식이다. 네 번째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이혼하려는 부모 중에서 원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법원과 연계하여 이혼하려는 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에 관해서는

초기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다. 일부 부모들은 강제로 명령받는 것을 싫어하거나 분개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만족도를 조사한 다수의 연구들은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고, 강제로 참석하였지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유타 주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32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연구(Loveridge, 1995, Cookston, Sanford, braver & Genalo, 2002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참여자의 56%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데 대해서 분개하였다. 그러나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는 참여자의 93%가 프로그램이 가치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89%가 이러한 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실제로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강제적이지 않은 한 사람들은 이러한 교육을 받으려 하지 않으며, 일단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교육의 필요성과 이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점점 교육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기울어지고 있다. 법적 강제는 결합이 아니라 오히려 이혼하려는 모든 이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낙인효과가 없으며, 문제를 보편화, 정상화하는 강점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Bussey, 1996).

한편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혼하려는 부모 중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교육의 목적이 부부간의 갈등의 악영향을 인식케 하고 협력적 부모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니 만큼 대개는 부모 두 사람 모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반드시 같은 반에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다(Criddle, Allegood & Piercy, 2003).

4) 프로그램의 구조와 진행

미국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수는 100개를 넘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 가는 참석자 수나, 진행 시간과 빈도, 프로그램의 구조와 진행방식, 진행자, 요금의 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우선 법원과 연계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 현황을 보면(Blaisure & Geasler, 1996), 프로그램에 참여자수는 일년에 100-

750명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2/3가 한 번의 회기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 회기당 진행시간은 2시간이 28.9%, 4시간이 26.4%로, 2시간에서 4시간 진행되는 경우가 전체의 75%로 가장 많았다.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빈도는 매달(23%), 격주로(23%), 매주(13.4%)로 나타나 매달 1-4회 제공되는 경우가 약 60% 정도였다.

프로그램의 구조와 진행방식은 강연과 비디오 테이프 시청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았다. 비디오 테이프는 주로 부모사이에 중간에 낀 자녀의 고통과 느낌을 자녀의 입장에서 보여주는 내용이다. 참여자들에게는 프로그램 매뉴얼이나 워크북, 유인물, 책자가 주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숙제물이나 참고도서 목록도 주어진다. 대부분의 짧은 프로그램은 짧은 강연과 책자를 통한 인지-교육적인 요소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진행되는 긴 프로그램은 강연이 끝난 후에 집단 토론이나 역할극을 통해서 정서-실험적 요소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역할극이 포함된 경우에는 참여자들은 역할극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Stone, McKenry & Clark, 1999).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상담가,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가족 치료사, 등 정신보건 혹은 인간관계 전문가들이 하지만, 소수의 경우에는 판사, 변호사, 법원 직원 등과 같은 법조계 인사들, 혹은 교사, 간호사, 협력 기관 직원 등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자는 일정 수준의 훈련이 요구되었다. 진행자는 한 사람 보다는 두 사람이 하는 것이 더 좋고, 남성과 여성이 한 명씩 참여하여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는 남성 진행자와 여성 진행자는 참여자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남편과 아내로서 각 각 역할 모델이 되며, 양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Zibbell, 1992).

한편 프로그램 운영의 재정은 참여자가 내는 요금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법원의 보조, 기타의 순이었다.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내는 요금은 21\$-30\$이 26.9%, 31\$-50\$이 20.1%, 없다가 22.4%, 수입에 따라 부과하는 슬라이드제 방

식이 88%였다. 요금으로 내는 금액의 평균치와 최빈치는 부부당 30\$이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요금이 면제되었다.

한편 참석인원, 회기의 수,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업방식, 집단의 크기 등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은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의무적인가, 자발적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다(Braver et al, 1996). 법원의 명령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3/4는 한 번의 수업으로 끝나고, 월 평균 110명 정도가 참여한다. 반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43%는 3번 이상 교육이 이루어지며, 참여자는 월 평균 20명 정도이다.

따라서 법원과 연계된 프로그램은 수업방식이 강연과 비디오 시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도 주로 부모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비위협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자녀들을 위해 전배우자와의 관계를 보다 우호적으로 형성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이혼 후 자녀의 전형적 반응, 연령에 따른 자녀의 상이한 반응과 욕구들, 자녀를 세뇌하거나 다른 편 부모를 헐담하는 것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 등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반면에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은 대개 소집단에서 비교적 여러 회기 동안 진행되므로, 강연이나 비디오 시청보다는 질의 응답이나 집단 토론, 역할극 등 상호작용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어떤 의미에 자녀들을 위해 행동하기로 동기 부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모들간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에 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5.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법원과 연계된 의무적인 부모교육의 실시는 이혼 후 가족을 돕기 위한 광범위한 다양한 사회적인 개입의 하나이다. 따라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여타의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을 때 보다 실질적인 효과

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정서비스, 가정 폭력과 관련한 서비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부모교육은 조정(mediation) 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다. 1981년 캘리포니아 주의 입법화 이후 상당수의 미국의 주들은 법원을 통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중립적인 제 3자를 이용하여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권과 보호에 대한 의견들을 협상하는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법원과 연관된 조정, 양육권 평가, 방문에 대한 감독과 같은 광범위한 서비스가 부족한 법원에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혼가족을 돕기 위해 법원과 연계하여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부모 교육 뿐 만이 아니라 조정이나 양육권 평가, 개인 상담, 방문 감독, 등 다른 서비스 또한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었다(Arbutnot, 2002). 그리고 부모교육은 조정 서비스의 의미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교육이 사전에 실시되는 경우 법원이 명령한 조정이 가장 효과적이며, 합의에 쉽게 그리고 빠르게 도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Lehner, 1994). 따라서 부모교육프로그램과 조정 서비스의 연계는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며,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가정 폭력이 크게 문제가 되는 가족의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주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이혼 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80%는 가정 폭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극히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있다(Braver et al, 1996).

가정 폭력이 문제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참석을 면제해주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이럴 경우 별개의 보다 집중적인 코스에 참석하도록 요구한다. 이 경우 가정 폭력 프로그램은 일반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덧붙여서, 가정 폭력의 예방과 가정 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Clement, 1999). 미국에서 이혼 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전국의 154개의 카운티를 대상으

로 한 조사(Cookston et al., 2002)에 의하면 이 중 가정 폭력이 문제가 된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카운티는 41개(27.2%)에 불과하였다.

셋째로 자녀들을 위한 직접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는가 하는 점이다. 자녀들에게도 이혼 후 생활의 변화로 나타나는 과업들에 대처하도록 자녀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Pedro-Carroll, 1999). Braver 등이 조사한 541개의 카운티의 90%가 법원과 연결된 자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있지 않았다. 그러나 22개의 카운티는 부모교육의 일부로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미네소타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법원은 자녀들에게 연령에 적합한 상담을 받도록 요구한다(Clement, 1999). Cookston 등(2002)이 조사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미국 전역의 151개 카운티 중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곳은 38개(16.2%)에 불과했다. 그러나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카운티의 약 절반(56개)은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채택을 고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기존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아동을 포함시키거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의 실시가 늘어날 전망이다.

IV.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전망

지난 10년 동안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이혼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과연 목표로 한 효과를 거두었는가에 관한 조사와 연구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법원과 연계된 프로그램은 참석이 의무이고 강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이혼 후 자녀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증대시키고, 부모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특히 전배우자간의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및 협력적 부모역할의 중요성에 초

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부모의 변화를 통해 자녀가 부정적인 영향력의 감소와 긍정적인 영향력의 증가를 실제로 지각하고, 사회·심리적으로 보다 잘 적응하는 것이다. 셋째, 전배우자간의 갈등의 감소되고, 협력적 부모관계가 증진됨에 따라 자녀를 둘러싼 법정 소송과 재소송이 감소되고, 이로 인한 법적, 사회적 비용의 감소되는 것이다.

과연 미국의 이혼 후 부모교육, 특히 법원과 연계하여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조사연구를 대상과 방법별로 보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다. 이 때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많이 측정되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부모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되었는지가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심층 면접과 같은 질적인 연구도 이루어졌으며, 장기간의 효과를 추적하는 종단적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다. 둘째, 부모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들의 태도와 행동에 변화가 있었는지, 자녀의 적응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직접 조사하는 연구이다. 셋째, 법조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와 재소송 유형이 어떠한지를 묻는 설문 조사가 이루어졌다. 넷째, 법원 서류를 검토하고 재소송율을 분석함으로써, 부모교육이 재소송율을 낮추었는지를 평가하려는 조사가 있다.

먼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들은 이혼 교육을 끝마친 직후에 출구조사를 통해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부모들의 태도를 조사하는 소비자 만족도 조사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료들은 이혼하는 부모들은 그들이 참가한 이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우호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당한 연구들은 응답자들은 처음에 강제로 출석하는 것에 대해 분개한 사람들조차도 이 프로그램이 유익하고 유용함을 알게 되었음을 나타내 준다(Arbuthnot & Gordon, 1996; Frierhan, Garon & Garon, 2000; Kramer & Washo, 1993; Petersen & Steinman, 1994; Stone et al., 1999).

더구나 Petersen과 Steinman(1994)은 프로그램에 참석한 후 대다수 부모들은 전 배우자와 자녀문제를 놓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기꺼이 바꾸려고 하며, 자녀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조정을 생각하였음을 보여줌으로써, 부모교육이 자녀를 둘러싼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프로그램의 참여가 부모의 태도뿐만 아니라 부모의 행동에도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다. 교육을 받은 부모들은 자녀를 중간에 끼게 한다든지, 자녀를 메신저로 이용한다든지, 자녀 앞에서 다른 편 부모의 험담을 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바꾸고, 전배우자와의 갈등을 적게 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가 하면(Stone et al., 1999; Toews & McKenry, 2001), 태도 면과는 달리 행동 면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Zibbell, 1992)도 있다.

통제 집단을 사용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이 부모의 행동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평가한 연구들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고 있다. 종단 연구를 통해 부모교육이 4-6년 후까지 장기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조사결과(Arbuthnot & Gordon, 1996; Stone et al., 2000; Criddle, et al., 2003)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상반된 조사결과도 있다(McKenry, Cairk & Stone, 1999).

한편 이혼하는 부모들을 교육 세미나에 의뢰한 전국의 가정 법원 판사들은 대체적으로 부모교육 세미나가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경향이 있었다(Fischer, 1997; Hughes & Kirby, 2000).

다른 한 편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자녀를 둘러싼 법적 소송과 재소송의 빈도를 낮추는가 하는 면에서 보면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뚜렷하지 않다(Kramer & Kowal, 1996; McClure, 2002).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프로그램의 효과는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며, 프로그램에 참여할 당시 갈등이 심했던 부모들일수록(Kramer & Washo, 1993), 참여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결혼 기간이 짧을수록, 결혼한 횟수가 적은 사람일수록 큰 것

으로 나타났다(Feng & Fine, 2000). Kramer와 Kowal(1996)도 프로그램의 참여가 이혼과 관련하여 재소송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6년 후의 법원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연구한 결과, 처음부터 갈등이 심했으며, 자녀를 두고 심하게 삼각관계에 있었던 부모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재소송을 덜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부모교육은 위기의 가족인 경우에 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부모들이 이혼 교육을 받은 것이 과연 아동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아동들의 평가가 더 정확한 평가일 수 있다. 8세에서 13세까지의 아동 14명을 대상으로 focus group 면접을 실시한 한 연구(Hans & Fine, 2001)에 의하면 자녀들은 부모들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은 여전히 부모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요청을 받았으며, 부모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좌절감을 느끼고, 부모간의 싸움을 목격하였다. 물론 이것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추론할 수는 없지만, 프로그램이 완전히 성공적이지 않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이혼 후 부모교육의 효과에 대한 조사들은 조사대상이나 방법에 따라서 일관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교육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들의 방법론상의 문제점은 계속 지적되어 왔다(Bussey, 1996; Feng & Fine, 2000; Whitworth, capshaw & Abell, 2002). 여기에는 표본의 크기가 적고 의도적 표집을 한 점, 통제집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질적인 평가의 필요성, 타당한 결과 측정치의 선정, 응답시의 사회적 기대(social desirability)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미국에서 실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특히 법원과 연계되어 실시된 의무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프로그램은 부모의 행동을 크게 바꾸거나 자녀의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는 그 효과가 뚜렷하지 않지만, 부모들

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모들은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이혼 후 부모 자신들의 태도와 행동을 아동중심적인 시각에서 지각하고 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 나아가서 부모교육은 보다 자녀를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자녀를 보다 잘 양육하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관심과 동기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효과를 가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혼 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많은 부모들은 한 번의 교육으로는 불충분하며, 후속 교육을 원하거나, 부가적 사회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부모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한 지지 집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Hans & Fine, 2001; Kramer & Kowal, 1998; Stone et al, 2000). 한 연구에 의하면 의무 프로그램에 참석한 부모의 57%는 더 긴 기간 동안 자녀양육 기술과 갈등 관리 기술 등 구체적인 기술을 더 자세하게 습득하는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받고자 하는 데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Cookston et al., 2002).

사실 한 두 번의 교육, 그것도 2-3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짧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 자녀에게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혼 후 부부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자녀를 위해 협력적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일이 그리 단순한 작업이 아닌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힘든 작업이다(Freiman et al., 2000; Stone et al., 1999). 따라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이 가지는 시간적인 제약은 인정한다면, 미국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이혼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적이고, 초보적인 예방조치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의 이혼 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이혼 후 부모들의 갈등의 문제점과 협력적 부모역할의 수행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어서 양육부모의 자녀양육 태도와 기술 및 이혼 후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자녀들의 지각과 이에 대한 대처기

술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혼과 부모의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키거나 완충하는 데 양육 부모의 양육방식 및 자녀와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이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Hines, 1997; Simons et al., 1999; 유희정, 2001). 즉 이혼은 양육모로 하여금 유능하게 부모역할 수행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로 인해 자녀들은 행동상, 정서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이혼하는 동안이나 그 후 2년 간은 부모들은 양육태도에 있어서 일관적이지 못하고, 애정을 덜 보이고, 자녀에 대한 통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자녀의 적응과 복지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양육모를 대상으로 자녀들이 이혼과 관련된 사건들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이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지 등을 통찰하게 하고 이에 대한 부모의 대처기술과 자녀양육 기술,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식들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법원 외부에서 개발된, 양육 모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실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이혼 이후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하고 자녀의 정신건강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Wolchik et al., 1993, 2000; Forgatch & DeGarmo, 1999). 특히 Wolchik 등은 양육모를 대상으로 11번의 집단 과정(각각 1.75시간)과 2번의 개인 과정(각각 1시간)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특히 프로그램을 시작할 당시 더 문제가 심각했던 자녀에게 효과가 컸으며, 개입이 종결된 후 6년 이후까지 효과가 지속되었음이 발견되었다(Wolchik et al., 2000).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이혼 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법원과 연계하여 1회적으로 끝나는 단기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대상을 세분화하고 프로그램의 내용, 실시 시기 등을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대상을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로 세분화하고, 내용면에서는 구체적인 자녀양육기술이나 갈등처리 기술,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며, 교육 기간은 더 길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상당수의 미국

의 지방법원들이 현 프로그램의 변화를 통해 부모 교육을 더 강화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okston et al., 2002). 현재 법원과 연계해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 전역의 조사된 카운티 154개 중 60%가 3년 이내에 현 프로그램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변화를 계획하는 카운티의 1/3은 더 길고 경험적으로 입증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기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거나, 혹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할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조사된 카운티 중 37%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채택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고, 19%는 양육 부/모를 위한 더 긴 프로그램을 17%는 비양육 부/모를 위한 더 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었다. 자금 문제, 그리고 더 긴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부모의 참석이 저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담당자들(95%)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강화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미국 사회에서는 이혼 후 자녀의 적응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더욱 세분화되고, 내용이 길어지며, 이론과 조사에 근거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쪽으로 강화될 것임을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이혼의 최대 피해자는 자녀이다. 자녀들을 이혼의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가 이혼과 그 이후에 계속되는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과 정서를 이해하고, 가능하면 안전하고, 애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모들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오히려 위협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적절한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과 태도, 기술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이런 면에서 사회는 늘어가고 있는 이혼가정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개입을 해야 하며,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사회적 개입의 한 방식이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이혼 후 부

모교육 프로그램은 주 정부의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과 연계되어 전국에 걸쳐서, 의무적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이혼가정 자녀를 위한 사회적 개입의 모범적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가정 법원이 여기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이혼 후 많은 부모들이 자녀 문제로 법정 소송을 하며, 이것이 법원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이혼 당사자와 자녀 모두에게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뒷받침되었다.

미국에서 실시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방식은 다양하다. 이 중 법원과 연계하여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대규모의 교실에서 2-3시간 정도의 한 두 번 교육으로 실시되며, 주로 전반적인 의식 전환을 위한 강연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부모교육은 조정 서비스와 연계될 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혼 후 부모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부모교육이 참여한 부모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의 적응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조사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은 이혼 후 부모 자신들의 태도와 행동을 아동중심적인 시각에서 지각하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부모들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이 가지는 시간적인 제약을 인정한다면, 미국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이혼 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대중적이고, 초보적인 예방조치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이혼 후 부모들의 갈등의 문제점과 협력적 부모역할의 수행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양육 부모에게 자녀양육 태도와 기술 및 이혼 후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자녀들의 지각과 이에 대한 대처기술 등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기간이 짧은 점과도 연관된다.

앞으로 미국의 이혼 후 교육 프로그램은 단기간의 의무교육의 성격을 넘어서서, 대상이 더욱 세분화되고, 대처기술과 자녀양육 기술 등을 배울 수 있도록 내용이 길어지며, 경험적으로 입증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쪽으로 보다 강화될 것임을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혼 가족이 급증하면서 많은 이혼모들이 자녀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혼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혼 후 부모교육의 필요성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이혼한 당사자의 개인적 적응을 돕기 위한 장, 단기 교육 프로그램(김득성, 2002; 문현숙, 김득성, 2002)속에 부모역할 수행을 위한 내용이 일부 부분적으로 들어 있을 뿐, 본격적으로 이혼 후 부모교육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이제 우리 사회도 이혼 후 부모교육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시점에 이르렀다.

이혼 후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이혼 후 자녀를 둘러싸고 가족원들 간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한국사회에서는 부부는 이혼하면 남남이다, 자녀는 남편과 시댁의 자식이다, 따로 사는 부모와 만나면 자녀들에게 혼란만을 줄 뿐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해체될 뿐만 아니라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대체로 단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최재석, 1981, 한경혜, 김영희, 1994; 장혜경, 민가영, 2002; 서영주, 허남순, 2003; 유희정, 2005).

한 마디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혼 후 부모 자녀관계, 전배우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동중심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혼 후 한편 부모를 상실한 자녀의 고통이나 양 부모와 접촉하려는 자녀의 권리, 자녀양육비 지급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이혼 후 자녀를 위해서 양 쪽 부모가 해야 할 역할, 그리고 자녀를 위하

여 부모들이 협력적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사회적 규범, 모델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런 면에서 미국에서 대중적으로 실시되는 이혼 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미국에서 실시되는 이혼 후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이혼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들의 태도와 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아동중심적인 시각에서 지각하게 하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전배우자간의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협력적 부모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부모교육이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자녀를 둘러싼 부모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전배우자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로 인하여 비양육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도 단절되는 일이 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협력적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김득성(2002). 이혼적응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단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8.
- 문현숙, 김득성(2002). 이혼 후 적응을 위한 장기 교육 프로그램의 모형개발. 대한가정학회지, 40(6), 197-211.
- 서영주, 허남순(2003). 강원도 이혼여성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강원도.
- 유희정(2001). 부모의 이혼과 부모간의 갈등이 대학생 자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13(2), 57-78.
- 유희정(2005). 이혼 후 비양육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및 협력적 부모역할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5, 185-217.
- 장혜경, 민가영(2002).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여성개발원 정

- 책보고서.
- 최재석 (1981). 한국가족의 해체에 관한 연구.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위탁 연구과제.
- 한경혜, 김영희(1994). 이혼여성의 전배우자와의 관계 및 협력적 부모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가족학회지, 6, 103-128.
-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1). 이혼가정과 자녀양육. 자료집.
- 한국여성개발원(1996).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Amato, Paul R. (2000).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November), 1269-1287.
-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1(1), 26-46.
- Arbuthnot, Jack. (2002). A Call unheeded: Courts' perceived obstacles to establishing divorce education programs. *Family Court Review*, 40(3), 371-382.
- Arbuthnot, J., & Gordon, D. (1996). Does mandatory divorce education for parents work? A six-month outcome evaluation.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34, 60-81.
- Aro, H. M., & Palossari, U. K. (1992). Parental divorce, adolescence, and transition to young adulthood: A follow-up stud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2(3), 421-429.
- Blaisure, K. R., & Geasler, M. J. (1996). Results of a survey of court-connected parent education programs in U.S. counties.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 Review*, 34(1), 23-40.
- Blaisure, K. R., & Geasler, M. J. (1999). *Divorce education across the US*, Paper presented at the 3rd annual conference of the coalition for marriage, Family and couple education, Washington DC.
- Braver S. L. Salem, P., Pearson, J., & DeLuse S. R. (1996). The content of divorce education programs: Results of a survey.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 Review*, 34(1), 41-59.
- Bussey, M. (1996). Impact of kids first seminar for divorcing parents: A three-year follow-up.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6(1/2), 129-149.
- Clement, D. A. (1999). 1998 Nationwide survey of the legal status of parent education.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 Review*, 37(2), 220-239.
- Cookston, J. R., Sanford, L., Braver, E. S., & Genalo, M. T. (2002). Prospects for expanded parent education services for divorcing families with children. *Family Court Review*, 40(2), 190-203.
- Cridle, M. N., Allegood, S. M., & Piercy, K. W.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mandatory divorce education and level of post-divorce parental conflict.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9(3/4), 99-111.
- Emery, R. E. (1994). *Renegotiating family relationships: divorce child custody, and media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Feng, P., & Fine, M. (2000). Evaluation of a research-based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divorcing parents: The focus on kids program.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4(1/2), 1-23.
- Fischer, R. (1997). The impact of an educational seminar for divorcing parent: Results from a national survey of family court judg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8(1), 35-48.
- Forgatch, M. S., & DeGarmo, D. S. (1999). Parenting through change: An effective prevention program for single moth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7(5), 711-724.
- Frieman, B., Garon, H., & Garon, R. (2000). Parenting seminars for divorcing parents; One year later.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3(3/4), 129-143.
- Furstenberg, F. F., & Teitler, J. O. (1994). Reconsidering

- the effects of marital disruption: What happens to children of divorce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15(2), 173-190.
- Geasler, M. J., & Blaisure, K. R. (1999). 1998 Nationwide survey of court-connected divorce education programs.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 Review*, 37(1), 36-63.
- Hans, J., & Fine, M. (2001). Children of divorce: experiences of children whose parents attended a divorce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6(1/2), 1-26.
- Hines, A. M. (1997). Divorce-related transitions, adolescent development, and the role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375-388.
- Johnston, J. (1994). High conflict divorce. *The Future of Children*, 4, 165-182.
- Johnston, J. R., & Roseby, V. (1997). *In the name of the child*. 부모의 갈등과 폭력을 경험하는 이혼 가족 자녀를 위하여, 유희정 외 편역, 서울: 창지사.
- Kramer, J. P., & Kowal, A. (1998). Long-term follow-up of a court-based intervention for divorcing parents.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36(4), 452-465.
- Kramer, J. P., & Washo, C. A. (1993). Evaluation of a court-mandated prevention program for divorcing parents; The children first program. *Family Relations*, 42, 179-186.
- Lehner, L. (1994). Education for parents divorcing in California.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32(1), 50-54.
- Maccoby, E. E., & Mnookin, R. H. (1992). *Dividing the child: Social and legal dilemmas of custod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cClure, T. (2002). Postjudgment conflict and cooperation following court-connected parent education.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8(1/2), 1-16.
- McKenry, P. C., Clark, K. A., & Stone, G. (1999). Evaluation of a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divorcing parents. *Family Relations*, 48, 129-137.
- Pedro-Carroll, J. (1997). The children of divorce intervention program. in G. W. Albee & T.P. Gullotta(eds.), *Primary prevention works: Issues in children's and families' lives*, vol.6, pp.213-238. Thousand Oaks, CA:Sage
- Petersen, V., & Steinman, S. B. (1994). Helping children succeed after divorce: A court-mandated educational program for divorcing parents.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 review*, 32(1), 27-39.
- Roeder-Esser, C. (1994). Families in transition: A divorce workshop. *Family & Conciliation Courts Review*, 32(1), 40-49.
- Ross, Catherine E., & Mirowsky, John (1999). Parental divorce, life-course disruption, and adult depression,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23(3/4), 23-43.
- Salem, P. (1995). Education for divorcing parents: A new direction for family courts. *Hofstra Law Review*, 23, 837-843.
- Simons, R. L., Lin, K., Gordon, S. C., Conger, R. D., & Lorenz, F. O. (1999). Explaining the higher incidence of adjustment problems among children of divorce compared with those in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1020-1033.
- Stolberg, A. L., & Mahler, J. (1994). Enhancing treatment gains in a school-based intervention for children of divorce through skill training, parental involvement, and transfer procedur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147-156.
- Stone, G., Clark, K., & McKenry, P. (2000). Qualitative evaluation of a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divorcing parents. *Journal of Divorce and*

- Remarriage*, 34(1/2), 25-40.
- Stone, G., McKenry, P., & Clark, K. (1999). Father's participation in a divorce education program: A qualitative evaluation.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0(1/2), 99-113.
- Toews, M. L., & McKenry, P. C. (2001). Court-related predictors of parental cooperation and conflict after divorce.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5(1/2), 57-73.
- Wallerstein, J. S. (1989). *Second chances; Men, women and children a decade after divorce*. New York: Tickner & Fields.
- Wallerstein, J. S., & Kelly, J. B. (1980). *Surviving the break-up: how parents and children cope with divorce*. New York: Basic books.
- Whitworth, J. D., Capshew, T. F., & Abell, N. (2002). Children caught in the conflict: Are court-endorsed divorce-parenting education programs effective?.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37(3/4), 1-18.
- Williams, T. (1979). *Mental health in the 21st century*.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Wolchik, S. A., et al. (1993). The children of divorce parenting intervention: Outcome evaluation of an empirically based program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3), 293-331.
- Wolchik, S. A., et al. (2000). The new beginnings program for divorced famil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 843-856.
- Zibbell, R. A. (1992). A short-term, small-group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 for separated and divorced parents in conflict.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18(1/2), 189-203.

(2004년 10월 7일 접수, 2005년 3월 28일 채택)